

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

-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준법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보도, 횡단보도, 버스정류소, 교차로, 소방용수시설 등 주정차금지구역은 「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즉시 단속」될 수 있습니다.
-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0조,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,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.
-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 기간 내에 본 스티커를 지참하여 관할구청(주차단속부서)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
차량소유자 고지사항			위반사항 (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)		
등록번호		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차로, 횡단보도, 건널목, 보도(인도) 주·정차		
위반장소		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·정차		
위반일시	20	년 월 일 시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·정차		
단속차	소속		<input type="checkbox"/> 버스정류소의 기둥, 표지판,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·정차		
의견진출	연락처		<input type="checkbox"/>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·정차		
	관할구청 (부서)	()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,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주·정차		
	연락처		<input type="checkbox"/> 터널 인 및 다리 위 주차		
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. ※ 과태료 금액 및 경감(가산금) 부과 등 안내(뒷면 참조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공사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		
			<input type="checkbox"/> 로부터 5m 이내 주차		
			<input type="checkbox"/>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m 이내 주차		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지방경찰청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·정차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		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차의 방법, 시간 등의 금지사항 위반		
			<input type="checkbox"/> 타 교통방해(소방차동행로주차, 2중 3중주차, 진출입방해 등)		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어린이(노인, 장애인) 보호구역 내 주차		

서울특별시경찰서



차량소유자 귀하